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-2078호

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마천1구역) 변경 결정(안) 공청회 개최 공고(변경)

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마천1구역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11월 20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공청회 개최 목적

가.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마천1구역) 변경 결정(안)에 대한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

2.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가. 일 시 : 2025년 12월 8일(월) 16:00

나. 장 소 : 마천청소년센터(송파구 성내천로 319, 5층)

3. 재정비촉진계획(마천1구역) 변경 결정(안)의 개요

가. 지 구 명 :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

나. 위 치 : 송파구 마천동 194-1번지 일원

다. 구역면적 : 155,937.3㎡

라. 사업방식 : 민간재개발사업

마. 공청회 내용(주요내용)

- 촉진구역 결정,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, 토지이용계획, 용도지역 변경계획, 건축시설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안) 전반에 관한 사항

4. 공청회 의견

가. 서면제출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주택사업과
(우편번호 : 05552)
- 연락처 : 02-2147-2897

나. 방문제출

- 공청회 참석 주민과 이해당사자는 공청회 당일 비치된 의견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안) 관련 의견을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-2082호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20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주차권 신청 및 발급, 관리 방식이 전자화됨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정기주차권 신청 및 발급, 관리체계 전자화에 따른 조문정비

(안 제5조, 제6조)

나. 기타 주차권 운영 방식 명문화(안 제6조제7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.12.10.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파구청장(참조: 주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차정책과 (☎ 02-2147-32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개정(안)	찬·반 여부	사 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처

- 주 소: (05552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, 송파구청
주차정책과(6층)
- 연 락 처: ☎02-2147-3202(FAX: 02-2147-3889)

※ 조례안의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 고
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2025-36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록하거나 전산망을 구축하여”를 “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”을 “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”으로 하고, “선착순으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”를 “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”로 한다.

① 주차권은 정기권, 시간주차권(별지 제3호서식)으로 구분한다.

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이용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”를 “이용자로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이 밖에 주차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주차장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
별지 제2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, 제1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) ①~② (생략) ③ 주차장관리자는 <u>별지 제5호서식</u>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록하거나 전산망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·감독 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5조(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) ① 주차권은 정기권(별지 제2호서식), 시간주차권(별지 제3호서식),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방문객 차량용 1일주차권(별지 제14호서식)으로 구분한다. ② 정기권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지 제7호서식</u>에 따라 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주차장관리자는 정기권 발급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<u>별지 제6호서식</u>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,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③ 정기권은 외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 유리 상단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. 또한,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자의 방문객이 주차할 때에는 방문객 차량용 주차권(별지 제14	제6조(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) ① 주차권은 <u>정기권, 시간주차권(별지 제3호서식)</u>으로 구분한다. ② ----- ----- -----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----- ----- -----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----- -----. ③ (삭제)

현행	개정안
<u>호서식)을 차량 앞 유리 상단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, 미부착 또는 미비치할 경우 주차요금 부과 또는 견인될 수 있다.</u> <u>④ 정기권을 교부받은 자가 정기권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.</u> <u>⑤ 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.</u> <u>⑥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1.~7.(생략) <u>⑦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차량은 3개월 주차요금을 이용 개시일 10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.</u> <u>⑧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)과 대문·점포 앞 구획 거주자에 대해 선정기준보다 우선 배정하고, 동일 구획에 신청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 기준으로 우선 배정한다.<개정 2019.8.29.></u> <u><신 설></u>	<u>④(삭제)</u> <u>③ ----- 이용자로부터-----</u> -----. <u>④(중전의 제6항과 같음)</u> <u>⑤(중전의 제7항과 같음)</u> <u>⑥(중전의 제8항과 같음)</u> <u>⑦ 이 밖에 주차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주차장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제2호서식] 정 기 권 (주간·야간·주야간) 발급번호 00000 배정주차구획 (주차장명) 유효기간: 년 월 일 차량번호: 수탁기관(연계)대표자 (뒷면) 지켜야 할 사항 - 배정된 주차구역 안에 배정된 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 - 다른 주차구역(예: 배정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)에는 단속, 견인 대상입니다.(단, 주차장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 제외) -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(단 부착 시 불태워질 수 있음) - 배정된 주차구역은 불경정유차에 주시기를 바랍니다. - 주차권은 영도할 수 없습니다. 문의처: 수탁기관(연계) (☎00-0000-0000)	<삭 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제5호서식]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 신청 관리대장 (0 0 통) <table><tr><th rowspan="2">신청일시</th><th colspan="2">신청자</th><th colspan="2">자동차</th><th rowspan="2">신청구분</th><th colspan="7">신청확인사항</th><th rowspan="2">배정(신청)</th><th rowspan="2">연락처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<tr><th>성명</th><th>주소</th><th>전입일</th><th>번호</th><th>차종</th><th>배기량(문)</th><th>종류</th><th>주인</th><th>아인</th><th>출제</th><th>국가유공자</th><th>장애인</th><th>공유권리</th><th>대분할</th><th>거주기간</th><th>신청기부</th><th>제남이부</th><th>배정일부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신청일시	신청자		자동차		신청구분	신청확인사항							배정(신청)	연락처	비고	성명	주소	전입일	번호	차종	배기량(문)	종류	주인	아인	출제	국가유공자	장애인	공유권리	대분할	거주기간	신청기부	제남이부	배정일부																					<삭 제>
신청일시		신청자		자동차			신청구분	신청확인사항									배정(신청)	연락처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명	주소	전입일	번호	차종	배기량(문)		종류	주인	아인	출제	국가유공자	장애인	공유권리	대분할	거주기간				신청기부	제남이부	배정일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제6호서식] 공영주차장 정기관 이용 신청 관리대장 주차장명: <table><tr><th rowspan="2">신청일시</th><th rowspan="2">성명</th><th rowspan="2">주소</th><th colspan="3">자동차</th><th colspan="3">이용구분</th><th colspan="2">신청여부</th><th rowspan="2">연락처</th></tr><tr><th>번호</th><th>차종</th><th>배기량</th><th>종류</th><th>주인</th><th>아인</th><th>신청여부</th><th>신청일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신청일시	성명	주소	자동차			이용구분			신청여부		연락처	번호	차종	배기량	종류	주인	아인	신청여부	신청일													<삭 제>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일시				성명	주소	자동차			이용구분				신청여부		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번호	차종	배기량			종류	주인	아인	신청여부	신청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

개정안

[별지 제7호서식]

<삭 제>

[별지 제7호서식](앞면)

정기권 ☐ (재)교부 신청서
☐ 취소

자동차소유자 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연락처	
대상차량	차량번호		차종 및 차명	
	등록지		매기량	
정기권사용기간	~	납입금액	원	
		환불금액	원	
주차장명		제교부 및 취소 사유		
취소시(폐지)시 환불금 산출금액:				
위와 같이 정기권 【(재)교부·취소】 를 신청합니다. 신청인: 년 월 일 - 주소: (서명 또는 인) - 성명: (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:) 수탁기관(협회) 대표 귀하				
※ 거주자우선주차회의 정기권 취소 시 방문 주차권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「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동의서」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(뒷면)				

[별지 제7호서식](뒷면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정기권 (재)교부·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☐ **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**
 - 주차장 정기권 (재)교부, 취소를 위한 신원일치 확인
☐ **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**

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자동차 소유주 인적사항, 차량정보, 신청인 성명, 주소	동의일로부터 5년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정기권 (재)교부·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☐ **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**
 - 주차장 관리 수탁업체(송파구시설관리공단 포함)
☐ **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**
 - 주차장 정기권 (재)교부, 취소를 위한 신원일치 확인
☐ **제공할 개인정보 항목**
 - 소유주 및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차량번호, 차명, 매기량
☐ **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, 이용기간**
 - 제공일부터 공영주차장이용취소(종료)시까지(종료 후 즉시 폐기)

※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)

성명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서명
	본인	☐ 동의 ☐ 마동의	☐ 동의 ☐ 마동의	
	대리인	☐ 동의 ☐ 마동의	☐ 동의 ☐ 마동의	

관 계 법 령

□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8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12. 12.>

1. 서울특별시 또는 송파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용이 가능한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<개정 2011. 12. 12.>
3.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12.>

②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에게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원증을 휴대토록 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12.>

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 50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수수료없이 관리한다. <개정 2011. 12. 12.>

1.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별도위탁관리계약 체결에 의하여 수탁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

2.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금약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

④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18조에 따른 시장·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용료(위탁수수료)의 감면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12.>

제13조(주차요금징수방법)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12.>

1.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
2.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
3.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

제14조의3(거주자우선주차구획)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